

지금 李委員님께서 改正前에는 有償使用許可를 했던 것을 이제 委任을 하면서 國民學校에는 왜 이것을 委任을 안했느냐 이런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教育廳의 職制上 國民學校는 職制 編制上 校長이 分任財產管理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高等學校 以上에 대해서는 財產管理官으로 任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會計法規 體系上 부득이 이번에는 分任財產管理官한테는 委任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除外되었던 것을 理解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教育委員會에 이왕 任命權을 委任을 하려면 6級 以下 또는 특히 技能職에 대한 轉補權이라든가, 技能職에 대한 新規任用 轉補權 委任問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新設하는 條項 第8條第1項에는 6級以下 一般職 公務員의 教育委員會에 轉補權이 완전히 委任이 됩니다. 다음 第2號에 보면 6級 相當 이것은 別定職이나 技能職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해서 別定職 公務員의 任命權이 委任이 됩니다. 그 다음에 第3號에 보시면 技能職 公務員의 新規任用に 대해서 轉補權이 완전히 委任이 되어 있습니다. 理解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蘇中天 李永輔委員님, 答辯이 만족하세요.

○李永輔委員 그러면 國民學校 校長선생님만 分任財產管理官이고 中學校 校長선생님은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中學校 校長선생님도 分任財產管理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高等學校에 한함이라고 明示를 한 것입니다.

○李永輔委員 그러면 여하간 住民들이 使用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金鎮成 그러나 현재 저희가 施行하고 있는 것은 國民學校, 中學校를 막론하고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運動場開放이라든가, 教室開放 이런 短期的인 使用許可權은

그대로 行使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規定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가 지난, 長期的으로 이것을 賃貸를 해 준다든가 어떠한 使用權을 附與해 줬을 적에 여기에는 使用料라든가, 여러 가지 問題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規定하려는 것입니다.

○李永輔委員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蘇中天 더이상 質疑하실 다른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와 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教育監行政權限의 委任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다하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하급기관에”를 “하급기관 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7호중 “제26호 각급학교”를 “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동조 제17호·제21호 및 제27호중 “제26호”를 각각 “제7호”로, 동조제26호중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를 “제7호 각급학교의”로 하고, 동조제32호중 “유상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동조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p>39. 기타 제7호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p> <p>제6조제6호중 “유상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p> <p>제7조제6호중 “유상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p> <p>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8조(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li> <li>2.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면</li> <li>3.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li> </ol>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로 하며, 松坡區에서 인수한 松坡圖書館을 松坡區 梧琴洞 51番地에 新設하는 것입니다.</p> <p>또 現 麻浦圖書館을 獨立된 圖書館으로 運營하지 않고 分館으로 運營하려는 것은 敷地 일부가 綠地帶로 指定되어 再開發時에는 殘餘 敷地가 현재의 505坪 中 240坪으로 縮小되어 獨立된 圖書館으로 運營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現 麻浦圖書館을 獨立된 別개 圖書館으로 運營하지 않고 分館으로 運營할 경우 年間 人件費 約 4億원이 節減되는 이점이 있습니다.</p> <p>또한 現行 圖書館設置條例 別表에는 圖書館의 名稱과 位置가 圖書館長의 職級順序에 따라 配列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圖書館의 施設 規模가 增加 또는 縮小되거나 新設될 때마다 圖書館의 配列이 달라지므로 條例를 改正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이를 圖書館의 設立順序에 따라 配列順序를 바꾸고자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입니다.</p> <p>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4.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p> <p>(10時 45分)</p> <p>○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爽雨 社會教育體育局長 李爽雨입니다.</p> <p>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그 改正理由를 말씀드리면 麻浦區 西橋洞에 소재한 新設 圖書館은 麻浦圖書館으로 名稱을 부여하여 設立하고, 현재의 麻浦圖書館은 麻浦圖書館阿峴分館으로 하며, 松坡區에서 建立하고 우리 教育廳에서 인수한 新設圖書館은 松坡圖書館으로 設立, 運營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主要骨子は 서울特別市 麻浦區 阿峴洞 602番地 소재로 되어 있는 現 麻浦圖書館을 서울特別市 麻浦區 西橋洞 341로 地番을 變更하고, 現 麻浦圖書館은 麻浦圖書館阿峴分館으로</p>	<p>○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p> <p>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li> <li>2. 제안사유 마포도서관을 신축·이전하고 기존 마포도서관을 마포도서관 아현분관으로 하며, 또한 송파구에 송파도서관을 신설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li> <li>3. 주요골자 ○ 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포도서관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li> </ol>